

기획조정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보고

《 법무담당관 》

□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 (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의 보고)

①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추진 배경

-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(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, '24. 6. 10.) 중 과도한 제재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발굴되어, 담당부서(식품정책과)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부처(식품의약품안전처)에 건의사항 제출('24. 8. 29.)

□ 주요 내용

- 건의제목

-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기준 구체화

- 현 황

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89조 [별표 23]에 따라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* 경과 제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, 위반 회차별로 영업정지 15일 ~ 3개월 처분**

*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 없는 기한(식품표시광고법)

** 1차 영업정지 15일, 2차 영업정지 1개월, 3차 영업정지 3개월

-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, 소비기한 1일만 경과하더라도 위반회차별로 영업정지 15일 ~ 3개월 처분에 해당하나, 동 규칙 상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처분기준이 완화('24.4.)*된 점을 감안하면,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의견 (제11회 행정심판위원회, 2024. 6. 10.)

* (1차) 영업정지 2개월→7일, (2차) 영업정지 3개월→1개월, (3차) 영업허가 취소폐쇄→영업정지 2개월

○ 관련 재결례

[서행심 2024-93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]

- OO구청장은 '24. 3. 20. 10:04경 서울특별시 OO구에 소재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에서 소비기한 경과제품(라면 3개, '24. 3. 19.까지)을 조리·판매 목적으로 보관(1차)사실을 적발하여(소비기한 1일 경과)되어, 영업정지 15일 처분

⇒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1/2 감경*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

- *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89조 [별표23] 1. 일반기준 15. 마. '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' 규정을 적용하여 감경

○ 건의내용

- 소비기한 경과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적용하되, 식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 경과일수가 식품별 소비기한 10% 이내인 경우로 감경기준 구체화(식품정책과 의견 반영)

※ 식약처 권장 소비기한 : 요거트 10일, 두부 90일, 김치 6개월, 라면 8개월 등
<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[별표 23] 개정안>

현 행			개 정 안		
I. 일반기준 15.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,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 마.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			I. 일반기준 15.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,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 마.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		
II. 개별기준 3. 식품접객업 10.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.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으로서 10) 별표 17 제7호 카목을 위반한 경우 가)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·식품 또는 그 원 재료를 조리·판매의 목적으로 운반·진열·보관한 경우			II. 개별기준 3. 식품접객업 10.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.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으로서 10) 별표 17 제7호 카목을 위반한 경우 가)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·식품 또는 그 원 재료를 조리·판매의 목적으로 운반·진열·보관한 경우(소비기한 경과일수*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) * 식품별 소비기한 10% 이내		
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